

보도 일시	2023. 1. 18.(수) 12:00 2023. 1. 19.(목) 조간	배포 일시	2023. 1. 18.(수)
담당 부서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부희 (044-202-7454)
		담당자	사무관 유광미 (044-202-7469)

##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 강화 -

### '22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사례

✓ 의료재단 ○○병원, 2017년 설립, 근로자수 65명, 병원업, 정년연장(60세→62세)

신규 채용으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업무 부적응으로 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 업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정년 도달 간호사, 방사선사 8명을 계속고용하여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다.

✓ (주)○○S&C, 2015년 설립, 근로자수 75명, 선박 부품 제조업, 재고용제도 도입

2017년 조선업 위기가 오면서 청년 인력이 회사를 떠나자 숙련 인력인 퇴직 근로자 3명을 재고용하고, 이들이 신규 직원들에게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2023년에도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3명이 있는데 계속고용을 할 계획에 있다.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자들은 정년 후에도 현재 일자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어 국민연금 수령까지의 소득 공백이 해소되고,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서 생산성 향상, 인력 채용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2022년 고용영향평가 발표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이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효과가 5.8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분석 결과, 계속고용제도 유형별로는 재고용 유형 77%, 정년연장 14.7%, 정년 폐지 8.3%로 재고용 유형을 가장 많이 도입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64.1%, 30~99인 29.4%, 100~299인 5%, 300인 이상 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크고,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활용 기업 현황>

(단위: 개소, %, '22.12.31. 기준)

#### ① 계속고용제도 유형별

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3,105*(100)	2,390(77.0)	457(14.7)	258(8.3)

\* 1개 사업장에서 2개 제도 도입한 경우 산정 내역 포함

#### ② 규모

계	30인 미만	30인~99인	100인~299인	300인 이상
3,028(100)	1,942(64.1)	890(29.4)	152(5.0)	44(1.5)

#### ③ 업종

계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사업시설 관리서비스업	기타
3,028(100)	1,523(50.3)	565(18.7)	245(8.1)	204(6.7)	130(4.3)	361(11.9)

하형소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지원을 전년보다 확대하여,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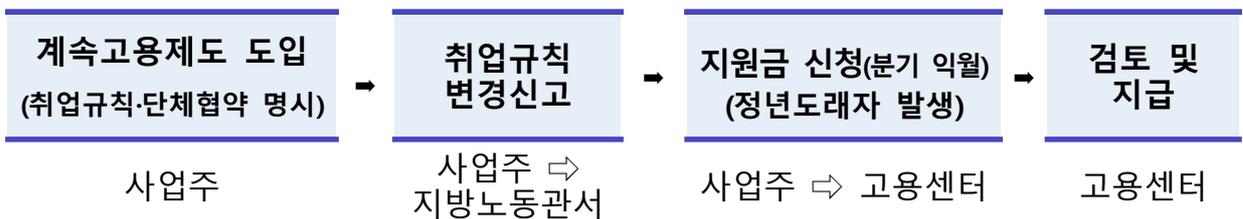
- 붙임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개요  
2. 자주 묻는 질문

- **(목적)**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정년이후에도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퇴직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
- **(수행주체)** 고용노동부(고용센터)
- **(지원대상)** 정년을 운영하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아래 중 하나의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① 정년을 1년 이상 연장(정년연장)
  - ② 정년 폐지(정년폐지)
  - ③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고용(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하는 제도를 둘 것(재고용)

\* 60세 이상인 피보험자수가 전체 피보험자수의 30% 이하인 사업주만 지원
- **(지원 수준 및 기간)**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 지원(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
-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지원체계)**



**Q/A 1.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원대상이 되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유형이 있으며, 노사가 협의하여 기업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면 됩니다.

- ❶ 정년 연장은 최소 1년 이상 연장하여야 지원이 가능  
(2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연장)
- ❷ 정년 폐지는 별도 기준 없음
- ❸ 재고용은 정년 도달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방식의 일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함

**Q/A 2. 취업규칙에 계속고용제도를 명시 하지 않았지만 정년 후 계속고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까?**

노사합의를 통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고, 제도 시행 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여 동 제도를 적용 받아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따라서 계속고용제도 시행 전에 이미 정년이 도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는 기업의 새로운 계속고용제도에 따라 고령근로자가 수혜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속고용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으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 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만 60세 이상 근로자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 근로자 1명 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까지 지원

QA 3.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면 됩니다.

다만, 60세 이상 피보험자가 전체 피보험자의 30% 초과한 사업장의 경우 이미 사실상 고령자 계속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이 증가되었다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A 4. 동일한 사업장에서 직종별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하는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지원되나요?

계속고용제도 도입 이전부터 직종별로 상이한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면, 직종별로 정년 연장,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지원됩니다.

QA 5.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소정근로시간 요건이 있나요?

소정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이 적용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대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년 이후에도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 총액이 110만원 이상인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QA 6. 계속고용장려금은 언제까지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 단위로 신청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 계속고용일이 '23.2.1.인 근로자의 경우 1분기 말일('23.3.31.)의 다음날인 '23.4.1.부터 '24.3.31.까지 신청 가능